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정보 제공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e행복한요양원2호점 입니다.

e행복한요양원2호점에서는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을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과 존중의 대상으로

대우하고 있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통해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님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상호협력 하에

어르신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 06. 14.

e행복한요양원 2호점



노인인권

UN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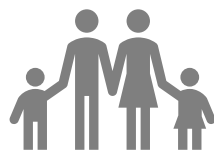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 내용 중-



나(자신)



남(타인)

노인인권은?

첫 번째,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사람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일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권은 도덕적 정당함을 지닌 권리입니다. 법과 제도, 정책이 미비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은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위한 돌봄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합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도 노년의 사람에 대한 인권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권의 보편성입니다. 인권은 특별한 관계나 특수한 지위의 계약관계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노년의 사람이 부모가 아니거나 다른 국적의 사람이라도 아프거나 위기에 빠졌다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그 비용을 공공의 재정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권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인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기에 인권은 모든 권리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권과 같이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람답다고 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 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권은 모든 사람의 고유한 존엄성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존엄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 계산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하고, 비교 불가능한 고유함을 지닌 존재라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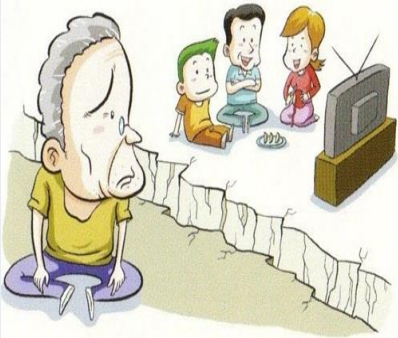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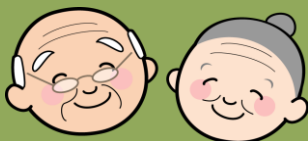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1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 심함.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측징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림.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측징후 :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임. 특정 유형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보임.	

노인학대예방

노인학대 유형2

유형	정의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예측징후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 도움의 대가로 노인 연금 일부를 가로챈.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할 생활비 및 의식주, 병원비 및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측징후 : 의약품이나 치료가 제공되지 않음. 영양실조 및 탈수로 인한 건강악화. 의복과 몸에 개인위생 관리가 안된 상태.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측징후 : 가족 및 보호자가 연락 및 왕래 두절. 노인의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e 행복한요양원

노인학대 없는나라
우리모두 노인공경



노인학대신고 상담전화

보건복지부 129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